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조례안

제 안 설 명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민에 근로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차원에서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관계로 인
한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시민의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며(안 제3조),

시장은 근로권 교육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6조).

근로권 교육 시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안 제7조),

근로권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8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 취지를 깊이 헤아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